제 29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4년 03월 11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62-01-2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	무단전출
박**	김** 1961-01-16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 미희 문의전화 : 031-324-6728)

2014년 03월 11일

마북동장 인